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69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이주환·김기현·김석기

김용판 • 박대수 • 서일준

성일종 · 정동만 · 최승재

최춘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절도·강도, 사기·공갈, 횡령·배임 등 「형법」상 재산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,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 수·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,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·추징할 근거규정이 명 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,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47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. 「주택법」 제101조제2호 · 제3호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몰수·추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「주택법」 제10
1조제2호·제3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·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